

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나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(1인)

다. 찬 성 자: 김영길, 김정도, 김재우, 김춘남, 박세채,
신용하, 안주찬, 이정희, 추은희 의원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9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1월 26일

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을 명문화하고 공공청사별 부설주차장의 특성에 맞는 주차장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(안 제4조의3)
-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(안 제17조제4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11. 19. ~ 11. 24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청사의 부설 주차장 관리·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절차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전국단위 행사·축제, 시 주요 행사, 설·추석 명절 등 법정 공휴일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대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·운영 및 요금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여 청사별 입지, 주차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시 월정기권 이용 주민 등의 주차 공간 부족이 우려되므로, 전용 면수 확보 및 우선 배정 기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, 정기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·홍보를 강화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 주요 행사의 지정 기준과 적용 범위를 향후 시행규칙 또는 관리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